■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[별지 제19호서식] <개정 2017. 12. 28.>

교육훈련기관 설립인가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20일

교육훈련기관명	
주 소	(전화번호:)
교육훈련기관의 장	

교육과정	직 종	정 원	교육기간
			년 월(실습 월)
			년 월(실습 월)
			년 월(실습 월)

「항만운송사업법」 제27조의4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고자 인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교육훈련기관의 장 (서명 또는 인)

해양수산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설립취지서 1부 2. 정관 1부 3. 설립자의 성명, 주소 및 약력(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, 정관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·주소)을 기재한 서류 1부 4. 사업계획서 및 수입·지출 예산서 1부 5. 재산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	수수료 없 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교육훈련기관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 수	→	서류심사 (필요시 보완)	→	시설 등 확인	→	결재	→	설립인가증 발급
신청인		처리기관: 해양수산부								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]